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1

심의일자	2018.3.21(수)		
사업명/신청위치	흥제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/ 서대문구 흥제동 270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8-07-2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완료
〔심의 내용〕 구조안전 심의			
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			
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『건축법』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			
< 구조안전 분야 >			
○ 적용기준 ACI318-08 CODE 삭제하기 바람.			
○ 지반치환 1.5m는 굴착시 높이가 시공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~최소 깊이(치환깊이)를 도면에 명시하여 시공조건과의 차이 부분에 대하여 보완시공 되도록 하기 바람, 지반치환 시방·시공순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.			
○ 코어부분에서 다이어그램 전달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슬래브 추가 검토 바람.			
○ 주차장 설치시 주동과의 조인트 계획에 대하여 검토 바람.			
○ 구조재료 사용에서 철근은 내진성능 발휘에 중요한 부위는 내진철근 사용 바람. (SD-500S, 600S 추천)			
○ 현장 여건상 시공과정에서 구조설계자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바, 구조설계자의 구조 감리 지원 검토 바람. 끝.			

2018.3.21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